

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제5조제2항 관련)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유의사항
1.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하여야 합니다.
3.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4.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6.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7. 평가위원 상호 간에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8.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평가점으로 합니다.
9. 순수한 채점자가 되어야 합니다.
10. 평가대상자(업체)에게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11. 평가대상자(업체) 측의 의사결정 내용을 언행으로 확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12. 평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13.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14. 편가르기식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15.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은 평가로 표현하고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16.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17. 평가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18. 누구든지 위원장 및 사업부서 장의 동의 없이는 제안서 평가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19. 위원은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20. 사업부서의 장이 제안서 평가가 종료되었다고 선언할 때까지 위원은 평가장 밖으로 나갈수 없습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공지사항
<p>오늘 참석하신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중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제안서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입찰 참가자(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2. 본인이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3. 본인이 제안서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입찰 참가자(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할 경력이 있는 경우 4.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입찰 참가자(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p>위 5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이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p> <p>위 내용에 해당하는 위원이 계시면 지금 위원장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